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기업 모집

- ◈ 문의 (사)경기경영자총협회 고용지원2팀 (T. 031-8014-5462 / E-mail. notice@gyef.or.kr)

1 지원대상

- 1. 수원, 용인, 화성 소재 기업
- 2. (유형1)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5인 이상* 우선지원 대상기업

※ 취업애로청년 : 아래 유형 중 한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청년

①4개월 이상 실업 ②고졸 이하 학력(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) ③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 ④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및 청년일경험지원·일학습병행 사업 수료 후 최초 취업 ⑤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⑥자립지원 필요 청년 ⑦대량고용변동신고 사업장에서 이직 후 최초 취업 ⑧북한이탈청년 ⑨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 취업 ⑩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미만

*단, 지식서비스·문화콘텐츠·신재생에너지 산업, 미래유망기업, 청년창업기업, 지역별(경기도) 주력 육성산업, 특별고용지원업종 해당 기업은 1인 이상도 가능

(유형2) 청년**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5인 이상 제조업 등 **빈일자리 업종*****의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해당 기업에서 참여 중인 청년 중 **18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**

- **유형2는 청년의 취업애로유형 해당 여부 상관없이 참여 가능
- ***빈일자리 업종
 - ①<제조업> 고용보험 상 사업장의 한국표준사업분류(제11차) 대분류가 'C.제조업'인 기업
 - ②<제조업 외 빈일자리 업종> 관계부처가 사전 수요를 제출한 기업
- 3. 연 매출액이 기준 피보험자 수 × 1,900만원 이상인 기업
 - ※ 업력 1년 미만 사업장, 고유번호증 소지 비영리단체, 면세법인사업자는 매출액 심사 대상 제외

4. 근로조건

- (근로계약) 정규직 (단, 3개월 이하 계약직 채용 후 정규직 전환한 경우 참여 가능)
- (보험적용)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
- (근로시간) 주 소정근로시간이 **30시간** 이상인 자
- (임금수준) 「최저임금법」이 정하는 임금 이상을 받는 자

※지원제외대상 청년

- ① 채용일 기준 취업 중인 자
 - 타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 중인 자, 동일한 사업장에서 자유직업소득자(프리랜서)로 3개월을

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자, 사업자등록을 한 자 등

- ②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·비속, 외국인,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,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(졸업예정 포함) 중인 자 등
- ③ 채용일 전 1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 또는 해당 사업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장에서 이직한 자
- ④ 인력공급업(7512), 경비경호업(75310), 사업시설관리서비스업(74100) 기업에서 간접고용 형태로 채용된 자

2 지원내용

- 2025년에 만 15-34세*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청년 1인당** 한 달 최대 60만원, **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**의 인건비를 지원
- 유형2 참여청년 대상 18개월 이상 근속 시, 장기근속 인센티브 최대 480만원 지원
 - *군필자의 경우,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최고 만 39세까지 인정

**지원한도 :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%

구분		기업지원금			청년 장기근	·속인센티브	계
정규직 채용(전환)일로부터		6개월 후	9개월 후	12개월 후	18개월 후	24개월 후	
최대 지원금액	유형1	360만원	180만원	180만원	-	-	(기업) 720만원
	유형2	360만원	180만원	180만원	240만원	240만원	(기업) 720만원 (청년) 480만원

③ 지원절차

1단계	2단계		3단계	\Rightarrow	4단계	\Rightarrow	5단계
사업 참여신청	협약 체결		청년 채용		채용자 등록		지원금 신청·지급

○ 사업 참여신청 방법

고용24 www.work24.go.kr > 기업지원금 > 신규채용 >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

- → 운영기관 '(사)경기경영자총협회' 선택 > 신청하기
- ※ 사업 참여 신청일 기준, 채용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청년은 참여 불가

※인위적감원(고용조정 이직) 등 발생 시 제한조치

- ※ 고용조정 제한 : 지원대상 **청년의 채용일 3개월 전**부터 정규직으로 채용된 후 1년의 기간 동안 고용조정 이직 (고용상실코드 23-1~8번, 26-3번)이 없어야 함
- ※ 대상 : 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청년뿐만 아니라 다른 근로자에 대한 고용조정 이직도 없어야 함
- ※ 지급 제한
- 고용조정 이직 발생일에 최소고용유지기간(6개월)이 도래하지 않은 청년은 지원금을 **일체 지급하지 않음**
- 고용조정 이직 발생일이 최소고용유지기간(6개월) 도래 이후인 청년은 최초 채용일(정규직)부터 고용조정 이직 발생일 전일까지의 지원금만 **월할계산하여 지급**하고, 이후의 지원금은 부지급함
- 사업 참여는 유지되나, 고용조정 이직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채용된 청년은 지원대상이 될 수 없음